

울산지방법원 2024. 5. 21 선고 2024가단305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4. 30.

판 결 선 고 2024. 5. 2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1. 도면 표시 ㄱ, ㄴ, ㄷ, ㄹ,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
(가)부분 132㎡를 인도하고,

나. 7,040,000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‘2023. 8. 1.부터 별지 1.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,000원을 지급하라.’를 ‘2023. 8. 1.부터 2024. 3. 30.까지의 미지급 차임인 7,040,000원을 지급하라.’는 취지로 청구금액을 정정하였다).
2. 적용법조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상민

별지